

의안번호	2209880
의 퇴 인	김승원의원
회 답 일	2025.4.22.
추 계 번호	25D23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50만원씩 총 1,25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안 제21조의3)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1조의3 (명단 공표)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둠(제2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21조의3 (명단 공표)	0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¹⁾와 보상심의위원회²⁾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정수는 7명이며 이중 민간위원은 5명임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보호조치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연평균
부과건수	2	-	4	1	-	7	1.4
부과금액	50	-	90	30	-	170	34

- 본 추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회 운영 사례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참고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정수를 7명(민간위원 5명)으로, 회의횟수는 연 2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을 참고하여 25만원으로 가정함
- 부칙에서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0조(구성)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보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 민간위원 5명 등 전체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보상금·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 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 내로 편성

· 원격지에서 위원회 참석시 소요되는 경비,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

- 참고로, 안 제21조의2제1항은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규정하고 있어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4)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설치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 수에 회의횟수와 회의참석수당 단가를 각각 곱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250만원씩 총 1,25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명, 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명단공표심의 위원회 설치 (안 제21조의3)	민간위원	5	5	5	5	5	-	-
	회의횟수	2	2	2	2	2	-	-
	수당 단가	25	25	25	25	25	-	-
	추가재정소요	250	250	250	250	250	1,250	2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 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와 달라질 수 있음

4)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61	jsy@na.go.kr